

시지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 안내

-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건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건본주택(<http://sj-greencore.co.kr>)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자유관람 또는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건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sj-greencore.co.kr>)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후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건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 사전예약제 안내

- 본 아파트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하신 분들만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건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건본주택은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정도에 따라 예약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폐쇄 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건본주택 방문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검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의 건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홈페이지(<http://sj-greencore.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건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건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①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②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③ 건본주택 입장 전 및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④ 건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 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는 경우
- ⑤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등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⑥ 기타 건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출입자 명단 기재 작성 등)

■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분양 상담전화(☎ 1533-3494) 및 홈페이지(<http://sj-greencore.co.kr>)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 신청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상호 오인하거나 누락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2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수성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1항제6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24.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 고시」제2017-164호(2017.09.20.)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1.06.24.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대구광역시)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고)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 / 1·2순위)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 재공급	○	○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 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j-greencor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신고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외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5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투기와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됨.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본 아파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자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자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자)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접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 / 경북거주자)	대구광역시 / 경북거주자			
일정	7월 04일 (월)	7월 05일 (화)	7월 06일 (수)	7월 07일 (목)	7월 13일 (수)	7월 13일 (수) ~ 7월 23일 (토)	7월 25일 (월) ~ 7월 27일 (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16:00)	
장소	■ 건본주택(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시지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건본주택 - 구비서류등을 지참 하여 방문 - 구비서류는 사업주체 홈페이지 참고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 -33388호(2022.06.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동 25-2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32층 7개동 아파트 총6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4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4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8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3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4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자	소계		
민 영 주 택	2022000371	01	076.9643	76	76.9643	24.1618	101.1261	46.8703	147.9964	45.2439	104	10	10	20	7	3	50	54	4
		02	084.8163	84	84.8163	26.2724	111.0887	51.6522	162.7409	49.8598	392	39	39	78	27	11	194	198	14
		03	106.9791	106	106.9791	31.5485	138.5276	65.1489	203.6765	62.8883	171	-	-	-	-	-	-	171	6
	합 계										667	49	49	98	34	14	244	423	24

- 저층 우선 배정세대(24세대)는 총 공급세대(667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주택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면적과 대지지분은 향후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약식표기)	동호구분	층구분	세대수	총 분 양 금 액				계약금(10%)		중도금 (40%)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차(20%)	2차(20%)	(50%)
										2022.10.20	2022.12.20	입주지정일
76	102동 1,2,3,4호	3층	4	432,697,000	264,303,000	-	697,000,000	10,000,000	59,700,000	139,400,000	139,400,000	348,500,000
		4층	4	437,043,000	266,957,000	-	704,000,000	10,000,000	60,400,000	140,800,000	140,800,000	352,000,000
		5~9층	20	442,009,000	269,991,000	-	712,000,000	10,000,000	61,200,000	142,400,000	142,400,000	356,000,000
		10층이상	76	450,700,000	275,300,000	-	726,000,000	10,000,000	62,600,000	145,200,000	145,200,000	363,000,000
84	101동,103동 1,2,3,4호	2층	12	469,945,000	287,055,000	-	757,000,000	10,000,000	65,700,000	151,400,000	151,400,000	378,500,000
		3층	14	474,912,000	290,088,000	-	765,000,000	10,000,000	66,500,000	153,000,000	153,000,000	382,500,000
	104동 1,2호	4층	14	479,878,000	293,122,000	-	773,000,000	10,000,000	67,300,000	154,600,000	154,600,000	386,500,000
		5~9층	70	484,844,000	296,156,000	-	781,000,000	10,000,000	68,100,000	156,200,000	156,200,000	390,500,000
		10층이상	282	494,156,000	301,844,000	-	796,000,000	10,000,000	69,600,000	159,200,000	159,200,000	398,000,000
106	105동 1,2,3,4호	2층	5	640,200,000	388,000,000	38,800,000	1,067,000,000	10,000,000	96,700,000	213,400,000	213,400,000	533,500,000
		3층	6	646,800,000	392,000,000	39,200,000	1,078,000,000	10,000,000	97,800,000	215,600,000	215,600,000	539,000,000
		4층	6	653,400,000	396,000,000	39,600,000	1,089,000,000	10,000,000	98,900,000	217,800,000	217,800,000	544,500,000
	107동 1,2호	5~9층	30	660,600,000	400,363,636	40,036,364	1,101,000,000	10,000,000	100,100,000	220,200,000	220,200,000	550,500,000
		10층이상	124	673,800,000	408,363,636	40,836,364	1,123,000,000	10,000,000	102,300,000	224,600,000	224,600,000	561,500,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층수는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함)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인근 건축물 간섭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76.9643	84.8163	106.9791
약식표기	76	84	106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유상오피스 등)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오피스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시행위탁사가 통보한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타 금융기관 미적용)
- 사업주체, 사업관계자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 등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시행위탁사가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가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합니다.(사본불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76	84	106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국가유공자	3	12	—	15
	장기복무제대군인	1	5	—	6
	장애인	4	12	—	1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5	—	6
	중소기업근로자	1	5	—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10	39	—	49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20% 범위)		20	78	—	98
생애최초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7	27	—	3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3% 범위)		3	11	—	14
합계		50	194	—	24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106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배정세대는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건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9세대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대구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구지방보훈청 의료대부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당첨자 선정 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9세대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	• 해당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방법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자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미성년 자녀 3명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자녀 중 영유아 1명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무주택 기간(4)	20	10년 이상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해당 시·도 거주 기간(5)	15	10년 이상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대구광역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 포함)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98세대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당첨자 선정 방법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1.11.16.)]에 따릅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자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우선공급 (기준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구분	5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7,450,721원	7,200,810원~8,640,971원	7,326,073원~8,791,286원	7,779,826원~9,335,790원	8,233,579원~9,880,294원	8,687,332원~10,424,797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8,692,508원	7,200,810원~10,081,133원	7,326,073원~10,256,501원	7,779,826원~10,891,755원	8,233,579원~11,527,009원	8,687,332원~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9,934,294원	8,640,972원~11,521,294원	8,791,287원~11,721,715원	9,335,791원~12,447,720원	9,880,295원~13,173,725원	10,424,798원~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4세대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22년 적용) <table> <tr> <th colspan="2" rowspan="2">공급유형</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th></tr> <tr> <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 <tr> <td rowspan="2">소득 기준 구분</td><td>우선공급(기준소득, 50%)</td><td>130% 이하</td><td>~8,071,614원</td><td>~9,361,052원</td><td>~9,523,894원</td><td>~10,113,773원</td><td>~10,703,651원</td><td>~11,293,530원</td></tr> <tr> <td>일반공급(상위소득, 20%)</td><td>130% 초과~160% 이하</td><td>8,071,615원 ~9,934,294원</td><td>9,361,053원 ~11,521,294원</td><td>9,523,895원 ~11,721,715원</td><td>10,113,774원 ~12,447,720원</td><td>10,703,652원 ~13,173,725원</td><td>11,293,531원 ~13,899,730원</td></tr> <tr> <td rowspan="3">추첨제 (30%)</td><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td><td>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td><td>9,934,295원~</td><td>11,521,295원~</td><td>11,721,716원~</td><td>12,447,721원~</td><td>13,173,726원~</td><td>13,899,731원~</td></tr> <tr> <td>160%이하</td><td>~9,934,294원</td><td>~11,521,294원</td><td>~11,721,715원</td><td>~12,447,720원</td><td>~13,173,725원</td><td>~13,899,730원</td></tr> <tr> <td>1인 가구</td><td>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td><td>9,934,295원~</td><td>11,521,295원~</td><td>11,721,716원~</td><td>12,447,721원~</td><td>13,173,726원~</td><td>13,899,731원~</td></tr> </tabl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표 「참고」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적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①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비치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구분	내 용
신청 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17-164호(2017.09.20.)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경상북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 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유의 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의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향후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적용 제한자로 관리됩니다. • 청약접수 방식 :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일반공급 1순위(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 - 대구광역시(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한 자 • 중복청약접수 관련 :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자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해당 하는 청약 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공통 ①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1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초과하는 경우 2순위 접수불가)
	※ 1순위 ①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대상자로 전환 함 ②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③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초과와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제/ 50%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공급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가점제 낙점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50%, 추첨제 50%) -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1분양권 등' 소유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 불가 ※ 가점제(50%) / 추첨제(5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점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에 속한 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기존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년 및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해당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층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세대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해당 주택형의 청약경쟁이 있었으나 계약이 되지 아니한 미계약 물량은 제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의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3명	20		-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소형·저가주택등”이란「전용면적」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IV 청약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2. 7.0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견본주택 (정보취약 계층 : 고령자, 장애인 등)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대구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2022. 7.05.(화)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 대구광역시 1년 미만 및 경상북도 거주자	2022. 7.06.(수) 09:00~17:30		
	2순위	2022. 7.07.(목) 09:00~17:30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 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층/동/호 구분 없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하며, 대구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자는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점제 당첨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승낙자로 한정) 3) 1) 및 2)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단,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된 신청에 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 제출일정
특별공급	• 일시: 2022.07.13(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일시 : 2022.07.13(수) ~ 07.23(토) 10:00 ~ 16:00 •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견본주택
일반공급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동 226-6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 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홈페이지(<http://sj-greencor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7.13.(수) ~ 2022.07.22.(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7.1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2.07.13.(수) ~ 07.23.(토)]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동·호수 추첨행사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http://sj-greencore.co.kr>)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홈페이지(<http://sj-greencore.co.kr>)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건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수동 226-6)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 의심자로 소명을 요청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제 증명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 서류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③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신청자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은 해당 세대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⑧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⑨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⑩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⑪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⑫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 제출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일부 생략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다자녀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한 추천명부로 대체
		○	②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③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④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

		○	⑤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⑨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⑦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⑧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⑨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⑩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⑤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⑥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⑦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 양 특별공급		○	⑧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리된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	• 건본주택에 비치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예비입주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제 증명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 표시 및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②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③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점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⑧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⑨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무주택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서류제출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 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V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2.07.25.(월) ~ 2022.07.27.(수) (3일간) 10:00~16:00	시지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 건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226-6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부산은행	101-2080-4240-01	KB부동산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101동 1103호 홍길동: 10111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연대보증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공동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 생략가능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위임용(본인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발급분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등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 확인 후 부적격 문제가 치유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분양금액의 연체, 계약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 검색을 의뢰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은 무효처리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릅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시행위탁자가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8.09.13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 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시행위탁자가 납부한 중도금대출 납부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인지세 납부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행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인지세 납부는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질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3년 0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위 입주예정일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입주예정일을 변경(연장, 단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계약상 지체상금 발생여부, 입주시연으로 인한 본 계약 해제권 발생 여부 등은 변경(연장)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시정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입주시정일이 잔금납부 기준일이 되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시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실입주시정일에 잔금 미납부시 실입주시정일 마감일로부터 연체가 발생합니다.(선납할인은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입주시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 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농구장) 1개소, 어린이놀이터 2개소, 작은도서관 등

VII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76	84	106
발코니 확장금액	무상	무상	무상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계약 및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에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할 수 없으며 무상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주택형 76형(10,000,000원), 84형(11,000,000원), 106형(12,500,000원)이며,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무상 공급함.(부가가치세포함)
- 본 아파트는 공정확인서상(2022.05.25.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실행 공정률 약 54.68% 공정진행으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며, 비확장 세대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및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미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선택 시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옵션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시공사 (주)삼정기업과 추가옵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추가옵션은 시공사인

(주)삼정기업 계약체결의 주체이자 하자담보 등의 관련 주체입니다. (시행수탁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무관함)

※ 본 공동주택은 현장 공정상 시공사 (주)삼정기업이 지정하는 기간 이후(신청 및 신청 마감기간 별도 안내예정) 아래 추가 선택품목을 신청 및 선택을 할 수 없음.

※ 정당계약기간 이후 잔여세대 계약시 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 마감재로 시공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	에어컨 설치 위치	옵션금액	계약금(10%)	잔 금(90%)	제조사
				계약시	입주지정일	
76	옵션1	거실+침실1	3,740,000	374,000	3,366,000	LG전자
	옵션2	거실+침실1+침실2	5,390,000	539,000	4,851,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260,000	726,000	6,534,000	
84	옵션1	거실+침실1+주방	5,170,000	517,000	4,653,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주방	7,260,000	726,000	6,534,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8,580,000	858,000	7,722,000	
106	옵션1	거실+침실1+주방	5,830,000	583,000	5,247,000	
	옵션2	거실+침실1+침실2+주방	7,370,000	737,000	6,633,000	
	옵션3	거실+침실1+침실2+침실3+주방	9,130,000	913,000	8,217,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내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 산정 시 해당금액은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할 경우 거실 및 침실1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건 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모델명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LG 빌트인 냉장고	전세대	5,720,000	572,000	5,148,000	S711SI24B	
LG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세대	1,100,000	110,000	990,000	K221PR14BL1	
LG 오브제 냉장·냉동·김치냉장고	전세대	4,070,000	407,000	3,663,000	냉장고 : X321GB 냉동고 : Y320GB 김치냉장고 : Z320GB	연결킷 포함
LG 인덕션 3구	전세대	1,100,000	110,000	990,000	BEIGTBI	
LG 하이브리드 3구	전세대	770,000	77,000	693,000	BEH3GTBI	인덕션 1구 + 하이라이트 2구
LG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세대	1,100,000	110,000	990,000	DUB22SB2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유상옵션 선택 시 평면에 따라 문열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유의사항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04-9742-05	(주)삼정기업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지정된 잔금 약정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공사 (주)삼정기업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시공사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표기(침실 1,2 등)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사 관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2이상의 자격을 갖춘 등록사업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연대보증사	
(주) 삼정이앤시	(주) 에이치비산업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온천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508호(우동, 오션타워)
164811-0054233	180111-0983379

※ 연대보증 내용 : 상기 연대보증사는 시행사가 부득이한 사정(부도, 폐업, 파업에 의한 직장폐쇄, 고의에 의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 될 경우 일체의 공사를 승계하여 공사 완료함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공 통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자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선의 외부는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에 따라 도로의 선형, 레벨, 패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잔금수납을 이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잔금 미납부 세대에 독촉을 고지 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 (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천장환 기구, 화장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온수분배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으며 필요 시 수분양자가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세대 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급 및 동급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 모형의 야간 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며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철재난간은 견본주택의 피난통로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철재난간은 본 공사시 사양, 디자인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 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 약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 옥수초 배치 예정 • 중학생 : 2학교군 내 분산배치 예정 • 고등학생 :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 분산 배치 가능 • 본 아파트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분양 자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374호선, 중로1-396호선, 중로2-590호선, 중로2-592호선)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서편 교량은 준공후 신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며, 차량통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지적 측량결과,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인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입주이후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수, 미생물 발생, 해충, 개구리 등의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 부지 북측의 존치건물 대왕레미콘, 남측 시지노인전문병원(모레아 장례식장) 시설로 인해 환경, 소음 등 침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동측 경산 중산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은 해당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사 및 추후 학교 운영 시 환경,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외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를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3층 915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하층 내 환기 및 제습을 위해 별도의 기계설비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유지 또는 운용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사업지 서측(101동 ~ 102동, 102동 ~ 103동 사이)에 2개소가 위치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차량 조명에 따른 빛반사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접세대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차량 및 이사, 택배차량 등은 지상의 비상차로를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현류 등의 급/배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단위세대의 동·향·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예정) 조성으로 인해 향후 인접세대에는 조망권, 환경권,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 단지모형 등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설치은 101동 지상1층에 어린이집, 경로당이 설치되며 101동 지하1층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됩니다. 101동과 102동 사이 지하1층에 경비실, 관리사무소(MDF실, 숙직실, 방재실 포함), 용역실, 커뮤니티센터(골프연습장, 헬스장)가 설치됩니다. 인접한 세대는 조망,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주변 및 상부에는 부대시설의 실외기실 및 설비시설, 제연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필로티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재활용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D/A(설비 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집적소는 지상 1층 101동 전면에 1개소, 105동 후면에 1개소, 104동 후면에 1개소, 107동 전면에 1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집적소 인근세대는 소음, 냄새, 분진, 시각적 간섭,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변경 및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부대복리시설 등이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냉난방, 환기시스템 등으로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건본주택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의 운반은 승강기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입주민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갯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탑층에 소화펌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마주보고 있는 세대의 경우 사생활 노출 등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TV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침해, 빛의 산란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101동) 지붕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기(지하층 및 지붕층 또는 옥탑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및 충전용 콘센트(급속2대, 완속9대 총 11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 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단지 내 택배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CCTV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안전, 편의성을 위해 설치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옥외 보안등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인허가 및 시공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상발전기 운전 시 운전 때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에는 석재, 석재뿔칠, 도장 등이 혼용되어 시공됩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옥수천로 20M도로, 남측에는 20M도로, 북측 15M도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치 이하의 소음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 동 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헬륨 또는 제연 헬륨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정화조 설치 지역으로 정화조 배기덕트, 배기헬 장비가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본 시공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저층부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 될 수 있고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BI를 포함하는 싸인물의 위치, 개소, 수량 및 규격은 실시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단지 내부로 차량이 출입할 수는 없으나, 소방차량 및 비상차량 등은 단지 내 구성된 비상차량동선을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습니다.
- PD, AD, PIT 공간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단차부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및 구조물에 의한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동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이는 동급 및 동급이상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업부재 내에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 승계 의무는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

	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설치 위치 : 1. 옥상층 - 104동, 105동, 106동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1. 지하1층 - 103동 통신실, 106동 통신실 2. 옥상층 - 104동, 105동, 106동 • 커뮤니티시설, 공용홀,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일부에는 생활방역 일환으로 사멸램프(원자외선 222nm램프)가 설치되며, 사멸램프의 인체영향 및 바이러스 사멸에 관한 사항은 제조사 홈페이지(http://nanocms.co.kr) 상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아파트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기준층 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면적 중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은 76주택형 3.0515㎡, 84 주택형 3.6322㎡, 106 주택형 9.9215㎡로 반영되어 있음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으로만 시공합니다. •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액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타입 세대 배치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 일반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해 동급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 미시공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 미시공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 미시공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가구 하부 걸레받이 미시공 • 확장 시 안방 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바닥 물흐름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실외기실 위치에 따라 인근 실과의 바닥 마감레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배수 드레인, 선홍통, 각종 배관, 가스관 등은 시공 여건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점검구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주방가구 깊이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급 및 동급 이상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금속문 및 목창호, PL창호의 문짝, 프레임, 손잡이, 힌지 등의 형태, 색상,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됩니다. • 가스보일러는 세탁기 설치 공간 내부에 설치 될 예정이며, 자세한 위치와 사이즈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또는 견본주택에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가구 및 가전제품의 열림방향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하향식피난구실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본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벽체 및 천정은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생길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의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거실마루,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아트월, 욕실바닥/벽타일, 주방타일, 현관 디딤판, 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상판, 거실바닥 등의 자재가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가 다소 상이 할 수 있고, 자재 특성 상 패턴, 나누기,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갈라짐 현상이나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타일 및 인조대리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및 아트월의 타일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비확장시 확장세대와 상이합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와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없이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에 하향식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옥외탈출형 대피시설 내에는 하향식피난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해당공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 및 그 사용,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 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관련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하향식피난구실이 설치되는 부분은 발코니 마감보다 높을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존재하는 발코니에는 비상검용 조명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추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개방시 아래세대 월패드 및 관리사무실에 신호가 전달되니, 임의 개방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열교환 환기장치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작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난방(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가구 및 냉장고장 하부에는 바닥난방(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침실에 적용되는 냉매배관은 에어컨의 연결 및 유지보수를 위한 커버가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가스계량기와 메인 주방에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의 관경 및 인입경로, 가스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정에 위층세대의 급수급탕분배기와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의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에 피난을 위한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시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준공 인허가 과정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마트스위치/분전함/단자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침실 내부 (본 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이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월패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3KW 이상의 제품을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안방 발코니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안방 및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의 통합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온도조절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거실에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회선 가입 및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2층(필로티 제외), 최상층 1개층은 각상문 부위에 나머지는 거실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1년 이며, 사용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가구벽체 폭은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후드 위 덕트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76타입 단위세대 현관창고에는 전원, 전선 유지보수를 위해 천정에 점검구가 추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거실메인등은 디밍조명이고 네트워크 스위치로 50%, 100% 두단계로 밝기 조작이 가능합니다. • 거실등과 주방등은 4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로구성 변경에 대한 공사일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법률에 따라 단위세대 각실에 일부 대기전력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 단자함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능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스마트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월패드,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디지털 도어락, 현관 도어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품목별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 선택 시 가구,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 또는 내부로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고, 선택 가능한 유 무상옵션 항목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도장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및 공용부 타일 마감은 타일 물성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휨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휘트니스센터, GX실, 다목적실 등)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 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소음, 열기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IX	기타 사항
----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채택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개별 보일러 효율 91%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거실 및 각 침실에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 0.224g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비고
주차장 차로의 높이	3.9m	3.9m~4.95m	2.55m	주차장 상부에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높이 전체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3.9m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소방감리
상호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국전기설계감리기술단	서한컨설팅(주)
감리금액	₩2,571,525,000-	₩548,958,430-	₩385,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휴먼베이스파트너스(“정”), 시행수탁자 KB부동산신탁(주)(“갑”) 및 시공사 (주)삼정기업(“병”) 대출금융기관 등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을”)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 공급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2) “을”은 반드시 공급대금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갑” 명의의 수납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을”은 본 공급대상물건이 신탁법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정”)와 수탁자(“갑”)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매도인)의 “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이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이 경우 “갑”은 매도인(수탁자)으로서의 모든 의무에서 면책된다.
- (4) 공급대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갑”은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갑”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갑”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 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병”에게 있고, 매도인(사업시행자)으로서 일체의 의무는 “정”에게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추후 “갑”에게 어떠한 요구 및 의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5) “을”은 “갑”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책임은 “병”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교체 시 “을”은 이에 사전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 (6) 사업주체(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정”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을”은 이와 관련하여 “을”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 (7) 위탁자 “정” 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갑”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인과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인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인이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인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을”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을”에 대한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등록업자	KB부동산신탁(주)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서울 1997-0012
사업방식	관리형토지신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대지소유권 100% 확보
소유권 이전 형태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개별등기	사업계획승인	대구광역시청(2019-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착공일	2020.07월	준공예정일	2023.06월 예정

■ 사업관계자

구 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
상 호	(주)휴먼베이스파트너스	KB부동산신탁(주)	(주)삼정기업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82길 5, 5층 (삼성동 덕봉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온천동)
법인등록번호	110111-6849660	110111-1348237	144411-0000150

■ 건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226-6

■ 분양홈페이지 : <http://sj-greencore.co.kr>

■ 분양문의 : ☎ 1533-3494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